



보건담당관 법령 제 23-01 호

알라메다 카운티 보건담당관 법령

2020 년 3 월 5 일 지역 보건 비상사태 선포 폐지 및 보건담당관 법령

제 20-02 호, 제 20-05G 호, 제 20-06T 호 및 제 20-18 호 폐지

발효 일자: 2023 년 2 월 28 일 오후 11:59

법령 개요: 본 법령은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담당관의 지역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폐지하며,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담당관 법령 제 20-02 호(검사실의 COVID-19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무화), 제 20-05g 호(COVID-19 에 감염된 자의 격리 의무화), 제 20-06t 호(COVID-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의 예방 격리 의무화) 및 제 20-18 호(장기 치료시설 거주자의 검사 의무화)를 폐지합니다. 이러한 폐지는 2023 년 2 월 28 일 오후 11:59 부로 유효합니다.

내력: 현 겨울에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매일 보고되는 COVID-19 입원 사례는 지난 2 해의 겨울 간 보고된 입원 사례보다 대체로 낮은 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. 이전의 COVID-19 대파동에 비교해, 중환자실 입원 사례와 COVID-19 로 인한 사망이 상당히 매일 감소한 수로 보고되고 있습니다. 이에 더불어, 가용한 병원 퇴원 자료가 나타내는 바로는, 다른 이유로 입원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COVID-19 감염에 비교해 보았을 때, COVID-19 질병으로 인한 입원 사례 비율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. 알라메다 카운티는 2023 년 1 월부터 미국 질병관리청의 낮은 레벨 COVID-19 지역사회층에 속했으며, 카운티 주민 중 백신 완료자는 86.6%에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접종 받은 사람은 93.9%로, COVID-19 에 맞선 백신 접종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. 최신 부스터샷 또한 마찬가지로, 알라메다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내 대부분의 카운티 및 전국의 평균을 초과하는 접종률을 보였습니다. 계속해서 COVID-19 가 카운티 내에서 퍼진다 해도, 지역 인구 사이 강화된 면역과 널리 가용한 치료로 인해, 이 질병이 공중보건에 가하는 위험이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. 이에 따라, 공중보건 담당관은 더 이상 지역 보건 비상사태 선포 또는 본 법령 내 명시된 보건담당관 법령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

COVID-19 는 계속해서 알라메다 카운티 내에서 퍼지고 있으며, 고령자 및 지역사회의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위험으로 남아있습니다. 최신 권장되는 COVID-19 백신의 접종이 계속해서 가장 효과적인 COVID-19 대응 전략 및 중증 질병,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방책으로 남아있습니다. 다음 링크에서 알라메다 카운티 내 COVID-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: <https://covid-19.acgov.org/vaccines>. 얼굴에 잘 맞는 고품질의 마스크와 호흡기 및 사람들이 많고 환기가 부족한 공간에 노출을 제한함으로써 COVID-19 감염에 추가적 방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중증 COVID-19 의 위험을 지닌 사람은 몸이 안 좋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치료 이용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

법령

캘리포니아 보건 안전법 제 101040 절, 제 101085 절 및 제 120175 절에 따른 권한으로, 알라메다 카운티 보건담당관 (“보건담당관”)이 다음과 같은 법령을 내립니다:

A. 2020 년 3 월 5 일 지역 보건 비상사태 선포 폐지

1. 본 법령은 2020 년 3 월 10 일 감리위원회의 선포 인준의 조건에 따라 카운티 보건담당관이 2020 년 3 월 5 일에 발령한 지역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폐지합니다. 본 폐지령은 2023 년 2 월 28 일 오후 11:59 부로 유효합니다.

B. 보건담당관 발령 폐지

2023 년 2 월 28 일 오후 11:59 부로, 다음 알라메다 카운티 대상 보건담당관 법령이 전체적으로 폐지됩니다:

1. 법령 제 20-02 호(검사실의 COVID-19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무화)
2. 법령 제 20-05g 호(COVID-19 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격리 의무화),
3. 법령 제 20-06t 호(COVID-19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의 예방 격리 의무화)
4. 법령 제 20-18 호(장기 치료시설(Long Term Care Facilities, LTCFs) 거주자의 검사 의무화)

보건담당관 법령 제 20-05g 호 및 제 20-06t 호가 폐지되었다 해도, 주민들이 이러한 법령 또는 기타 지시를 참고하여 COVID 감염 및 노출 대처 방안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.

C. 추가적 조항

1. 본 법령에는 절대로 어떠한 카운티 주민 또는 사업체가 최신 백신 접종 상태 유지하기,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 착용하기, 몸이 안 좋으면 집에 머무르기 및 노출되거나 몸이 안 좋은 경우 검사 시행하기와 같은 공기전파 질병의 확산에 권장되는 대처 예방책을 실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만류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.
2. 연방 및 주정부 법령 및 규정은 계속해서 모든 카운티 주민과 사업체에 적용합니다. 캘리포니아주에서 COVID-19 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 법령 또는 규정을 발령하게 될 경우, 본 법령에 의해 폐지된 법령이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해도 카운티 주민과 사업체에 구속력을 발휘합니다.

Nicholas J. Moss, MD, MPH
알라메다 카운티 보건담당관

2023 년 2 월 28 일

일자

